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해당기간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1.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기간 : 2021년 1월 18일~1월 20일

나이스에 국세청 자료 업로드하신 후 나이스/국세청 등 관련 서류 출력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내 미제출하시는 분은 기본사항으로만 정산 처리되며, 추가 공제 내역이나 수정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셔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1.1.15~ 제공 예정) : <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간소화

※ 일괄조회 가능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 **유의사항** : 1)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6번 주택자금공제 관련 - 문의사항은 국세청으로)

2)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5번 의료비공제 관련)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2002.1.1.이후 출생 자녀는 동의 불요)

5) 이외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가, 나, 다 전부)

가. 나이스 출력서류 전체 (서명해 주세요!!)

◆ 주소확인 : NEIS접속 - 기본메뉴 - 나의메뉴 - 인사기록 중 기본사항에서 본인 주소 확인

◆ 1. 소득공제신고서, 2. 의료비지급명세서, 3. 기부금명세서, 4. 연금지축명세서, 5. 월세명세서 (나이스 출력물 - 1. 반드시, 2 ~ 5. 해당하는 것 출력하여 서명)

나. 증빙 자료 : 간소화서비스 출력물(국세청 업로드한 자료 전체), 의료비, 기부금 등 국세청 외 서류

다. 주민등록등본 : 연말정산 해당 전 **교직원 제출**(본인 이름에 **형광펜으로 칠해주세요!!** 가족 변동사항 확인 및 감사 시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작년에 제출했어도 **내야합니다. 현재 기준 자료 필요!**)

※ 참고 사이트(공인인증서 필요) 1) 주민등록등본 발급안내 : 정부24 www.gov.kr

2) 건물 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3)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 정부24 www.gov.kr

4. 모든 서류는 단면으로 출력하여 원본 제출, **팩스 서류는 제출 불가**하며 **영수증 별첨 시 A4용지에 붙여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의료비영수증 국세청에서 누락된 자료 제출하실 때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시고, 없을 시 제외됩니다.(간이영수증 불가)

** 안경의 경우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6. **주택자금 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청하는 근로자는 **공제충족 요건을 아래에서 확인 및 국세청 문의 후 입력**하세요. 착오 입력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는 근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7. 연말정산 부당공제로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 세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기한 내 미제출하시는 분은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자로 같음하겠습니다.

기간 내 꼭!! 출력물과 첨부서류(서명 포함) 잊지 마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 입력방법(업로드 방법 안내)

< 입력사항 >

1. 입력방법 : NEIS접속 - 나의메뉴-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PDF업로드(국세청자료)

- 첫번째줄(국세청간소화서비스 출력물에 의한 금액), 두 번째줄(그밖(국세청 외)의 자료) 구분!!!
-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은 한도금액 계산하지 않고 입력,

교육비는 한도금액 초과입력하지 마세요~본인/장애인 전액, 대학생 1명당 900만원, 그 외 1명당 300만원)

※ 제출자료 : 나이스 입력 후 출력물 및 각종 첨부물(각종 영수증 및 납입증명서 : 간소화서비스 이용)

2. 의료비지급명세서 : 공제의료비(국세청 외 자료) 직접 NEIS에 건별로 입력

- ★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기타가족 각각 영수증을 분리하여 작성

입력방법은 NEIS접속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된 것은 자동 연계되므로, 기타로 발급한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증빙코드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등 해당여부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의료비 대상자 주민번호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3. 기부금명세서 : 공제기부금(국세청 외 자료 - 별도 영수증 발급한 건) 직접 NEIS에 건별로 입력

- ★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기타가족의 각각 영수증을 분리하여 작성

(입력방법은 NEIS접속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기부금명세서등록)

사업자등록번호와 단체명,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4. 연금저축공제등록 :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내역 건별로 입력

- * 연금저축/개인연금저축 착오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명칭 구분하여 확인하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의 경우 자동 업로드 및 입력되므로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5. 월세명세서등록 : 월세공제 직접 입력

※ **제출기일을 꼭 지켜서 NEIS통합급여 연말정산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공제에 대한 국세청 세금추징(가산세포함)이 더욱 강화 되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조회(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 126 - 내선 7번)

* 연말정산 일정이 촉박하여 **서류 제출 기간 내에만** 연말정산서류를 받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 제출 시 **개인 인증서** 지참해 주세요. (내역 수정 시 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안내

(<https://www.hometax.go.kr>(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간소화)

1)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증명서(이용문의 ☎ 126)

: 보장성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 주택자금공제금액 등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서류는 총괄표가 아닌 **각 항목별로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2020년 연도 중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는 항목별로 들어가 월별 내역이 나오도록 출력하여 제출
(예) 2020년 1월, 2월 근로소득 없이 3~12월만 근로소득이 있는 신규 입사자 등 중간 발령자

※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동의 신청 필요
홈텍스 온라인 신청(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미성년인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 신청 후 가능

2)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모든 영수증 및 증명서

(예) 산후조리원(조회되지 않는 경우만)/안경/교복구입비 등

※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기타 가족으로 각각 영수증 분리하여 **A4용지에 붙일 것**

※ **의료비영수증 제출 시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시고, **안경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는 안경사의 확인 및 도장이 있어야 함 (도장 없을 시 인정 불가)**

※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로 받을 수 없음**(단, 인터넷발급 및 통장사본(주택마련저축 등)은 허용)

※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포함 가능
(다만,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월세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따로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서류착오 시 정산 후 세무서장이 기관장에게 통보함)

3) 국세청 전자파일 다운로드방법

① 홈텍스의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소득공제자료 조회/발급 클릭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조회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 메뉴 이용하여 소득공제증명자료 조회 후,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

-다운로드 시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 설정(선택사항)]을 선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로 자동설정된다.

-안내메시지가 나오면 "저장"

-지정된 위치에 전자파일 생성

④ [필요 시] 상세(일별) 내역이 필요할 경우,

-의료비 내역 클릭 후, 전자문서 다운로드 클릭

-다운로드 양식 중 상세(일별) 내역 전자문서 다운로드 버튼 클릭

※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 설정(선택사항)]

※ 상세 내역은 국세청에서 공제 사항을 날짜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각 기관에서 날짜별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에게 요청한다. (신고파일 생성 및 홈텍스 신고와는 무관)

공제 종류별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안내

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인 적 공 제	1. 본인 공제 - 공제대상 : 본인(별도 요건 없음) - 공제금액 : 150만원																		
	2. 배우자 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 - 공제금액 : 15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부양가족 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일부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수급자(장애인 : 연령제한 없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0%;">부양 가족</th> <th style="width: 15%;">직계존속</th> <th style="width: 15%;">직계비속, 동거입양자</th> <th style="width: 15%;">형제자매</th> <th style="width: 15%;">위탁아동</th> <th style="width: 10%;">수급자</th> </tr> </thead> <tbody> <tr> <td></td> <td>만60세 이상</td> <td>만20세 이하</td> <td>만60세 이상 만20세 이하</td> <td>만18세 미만</td> <td>제한없음</td> </tr> <tr> <td>요건</td> <td>1960.12.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상 동거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양면이 다른 별거 인정)</td> <td>2000.1.1. 이후 출생자</td> <td>주민등록상 동거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일시퇴거 인정)</td> <td>2002.1.2. 이후 출생자, 20세 미만인 보호기간 연장 위탁아동 포함</td> <td>주민등록상 동거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일시퇴거 인정)</td> </tr> </tbody> </table> - 공제금액 : 1인당 150만원(요건 충족 시 전원 공제됨)	부양 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만60세 이상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만20세 이하	만18세 미만	제한없음	요건	1960.12.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상 동거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양면이 다른 별거 인정)	2000.1.1.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상 동거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일시퇴거 인정)	2002.1.2. 이후 출생자, 20세 미만인 보호기간 연장 위탁아동 포함	주민등록상 동거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일시퇴거 인정)
부양 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만60세 이상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만20세 이하	만18세 미만	제한없음														
요건	1960.12.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상 동거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양면이 다른 별거 인정)	2000.1.1.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상 동거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일시퇴거 인정)	2002.1.2. 이후 출생자, 20세 미만인 보호기간 연장 위탁아동 포함	주민등록상 동거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자 (일시퇴거 인정)														
추 가 공 제 (인적 공제 받는 가족 대상)	1. 경로우대 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나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배우자포함) 중 70세 이상인 자 (1950.12.31. 이전 출생자) - 공제금액 : 1인당 10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장애인 공제 - 공제대상 : 근로자나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자 - 공제금액 : 1인당 200만원 ※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인원수 제한이 없고, 다른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공제 중증환자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사본, 상이자증명서																	
	3. 부녀자 공제 - 공제대상 : 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배우자의 소득유무와는 무관) ③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총 급여액 41,470,585원) 이하인 거주자★ - 공제금액 : 연 5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한부모 공제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적용) - 공제금액 : 연 100만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의 근로자 부담금 - 공제금액 : 납부액 전액 공제																		
특 별 소 득 공 제	1.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제금액 : 납부액 전액(근로자 부담분) 공제																		
	2. 주택자금 공제 가. 주택마련저축(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고 본인 명의 주택마련저축이 있는 경우) 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무주택확인서 제출) 세대주(12월 31일 기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제 가능 ②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③ 공제금액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X 40%, 연 300만원 한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나.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또는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 ② 국민주택규모 주택(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개인 등)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 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상 입주일과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정이율(1.8% 이상)로 차입한 금액 ③ 공제금액 : 원리금상환금액 X 40%,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확인서 필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 대출기관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 개인 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임대차계약증서(연장 갱신이주의 경우는 연장, 갱신, 이주 전 계약증서 포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특별소득공제	2. 주택자금 공제	<p>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p> <p>①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2주택 이상 보유는 공제 불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1주택 실제 거주(과세기간 중 계속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차입(중도금 대출 등)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2019.1.1. 이후 차입)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때 (단, 2013.12.31. 이전 차입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2014.1.1. 이후 차입한 경우 기준시가는 4억원)</p> <p>② 차입금 상환기간,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일) 3월 이내 차입, 공제한도는 연도별 개정내역에 따름</p> <p>③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p> <p>④ 채무자(대출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영의)일 것!!!(공제 최소 요건)</p> <p>⑤ 공제금액 :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p> <p>*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 계산(2014.12.31. 이전 차입분 종전 한도 적용)</p>	<p>3.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대한, 차환, 연장 시)</p>																																	
	그 밖의 소득공제	<p>1. 개인연금저축</p> <p>- 공제대상 :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저축을 불입한 재(본인 명의 저축)</p> <p>-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X 40%(연 72만원 한도)</p> <p>★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다름!!!!!! 나이스 연금저축공제 명세서 출력 필요!!!!</p> <p>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p> <p>- 공제대상 :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동거입양자의 신용카드 등도 포함(형제자매 제외)</p> <p>-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 공제한도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2월</th> <th>3월</th> <th>4~7월</th> <th>8~12월</th> <th>총급여액</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신용카드</td> <td>15%</td> <td>30%</td> <td rowspan="2">80%</td> <td>15%</td> <td>7천만원 이하</td> <td>330만원</td> </tr> <tr> <td>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td> <td>30%</td> <td>60%</td> <td>30%</td> <td>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td> <td>280만원</td> </tr> <tr> <td>도시/광역/미술관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td> <td>30%</td> <td>60%</td> <td></td> <td>30%</td> <td>1억2천만원 초과</td> <td>230만원</td> </tr> <tr> <td>전통시장/대중교통</td> <td>40%</td> <td>80%</td> <td></td> <td>40%</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맞벌이부부의 신용카드 지출금액은 각각 공제해야 함!!!</p>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총급여액	공제한도	신용카드	15%	30%	80%	15%	7천만원 이하	330만원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30%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280만원	도시/광역/미술관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30%	60%		30%	1억2천만원 초과	23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총급여액	공제한도																														
신용카드	15%	30%	80%	15%	7천만원 이하	330만원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30%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280만원																														
도시/광역/미술관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30%	60%		30%	1억2천만원 초과	23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세액공제	1. 자녀공제	<p>- 공제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제외)의 수에 따라 공제(손자손녀 불가)</p> <p>- 공제금액 :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p> <p>- 출산, 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추가 공제</p>	<p>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p>																																	
	2. 연금계좌공제	<p>- 세액공제액 및 한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총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th> <th>50세 미만</th> <th>50세 이상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X)</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천만원(5천5백만원) 이하</td> <td>연금저축계좌 : 400만원</td> <td>연금저축계좌 : 600만원</td> <td rowspan="2">15%</td> </tr> <tr> <td>1억원(1억2천만원) 이하</td> <td>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700만원</td> <td>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900만원</td> </tr> <tr> <td>1억원(1억2천만원) 초과</td> <td>연금저축계좌 : 300만원</td> <td>연금저축계좌 : 300만원</td> <td>12%</td> </tr> <tr> <td></td> <td>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700만원</td> <td>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700만원</td> <td></td> </tr> </tbody> </table> <p>-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전환금액) :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연금계좌 납입한도액에 추가 공제</p> <p>★ 나이스 연금저축공제 명세서 출력 필요!!!!</p>	총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세 미만	50세 이상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X)	공제율	4천만원(5천5백만원) 이하	연금저축계좌 : 400만원	연금저축계좌 : 600만원	15%	1억원(1억2천만원) 이하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700만원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900만원	1억원(1억2천만원) 초과	연금저축계좌 : 300만원	연금저축계좌 : 300만원	12%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700만원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700만원		<p>연금납입확인서</p>														
	총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세 미만	50세 이상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 X)	공제율																																
	4천만원(5천5백만원) 이하	연금저축계좌 : 400만원	연금저축계좌 : 600만원	15%																																
	1억원(1억2천만원) 이하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700만원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900만원																																	
1억원(1억2천만원) 초과	연금저축계좌 : 300만원	연금저축계좌 : 300만원	12%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700만원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700만원																																		
3. 보험료공제	<p>- 공제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p> <p>- 공제금액 : 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X 15%(연 100만원 한도) ② 일반인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X 12%(연 100만원 한도)</p>	<p>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p>																																		
4. 의료비공제	<p>- 공제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 700만원 한도)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일정요건의 난임시술비는 전액 공제대상금액</p> <p>- 공제금액 : 15%(난임시술비는 20%)</p> <p>★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p> <p>* 미용, 성형수술, 간병, 및 건강진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p> <p>*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은 1명당 연 50만원 이내</p> <p>★ 나이스 의료비지급명세서 출력 필요!!!!</p> <p>★ 맞벌이부부 자녀의료비는 기본공제받는 사람만 가능, 배우자 의료비 본인카드로 지출 시 공제 가능</p>	<p>의료비지급명세서,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등</p>																																		
5. 교육비공제	<p>-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과 직계존속 제외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 소득금액 제한)</p> <p>- 공제금액 : ① 근로자본인 교육비 : 전액 X 15%(대학원 본인만 가능) ② 유치원아, 보육시설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교육비 : 1인당 지급액 X 15%(연 300만원 한도) ③ 대학생 교육비 : 1인당 지급액 X 15%(연 900만원 한도) ④ 장애인 재활교육 특수교육비(소득 제한 없음, 직계존속 포함) : 전액 X 15%</p> <p>* 제외 대상 : 별도 실기지도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값, 기숙사비, 어학연수과정 수업료, 학습지 교육비, 입사 전 교육비</p>	<p>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 유학 자녀학비는 공제대상요건을 갖춘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세 액 공 제	6. 기부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 제외,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포함)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연령제한 없음, 소득금액 제한)이 지급한 법정/지정기부금 - 공제금액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공제, 기부금이 한도액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공제만 가능 <p>★ 나이스 기부금명세서 출력 필요!!!!</p>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p>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대상 - 공제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을 초과한 금액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p>★ 나이스 기부금명세서 출력 필요!!!!</p>	정치자금 영수증, 기탁금 수탁증, 당비 영수증, 무정액 영수증, 정액 영수증
	7. 월세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주택자금공제(월세세액공제 포함)를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2017.1.1. 이후 지급분부터)도 포함 ②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③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인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 - 공제금액 : 월세액 X 12%(연 75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 X 10%(연 75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원 이하) <p>★ 나이스 월세명세서 출력 필요!!!!</p>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유형 ◆

과다공제 유형	내 용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총소득 333만원)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불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사망자 등 공제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국외이주 부양가족 기본공제 불가
연금저축 과다공제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 불가 ○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공제 불가
교육비 과다공제	○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국내·국외 대학원의 교육비 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공제 불가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 불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가능) ○ 간병비용을 의료비로 공제 불가 ○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
주택자금 과다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 보유주택 판정 시 동일 주민등록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야 함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맞벌이부부 공제 유의사항

공제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불가	기본공제 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1)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2)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3)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